

처 분 요 구 서

일련번호	1				
기 관 명	시행일	처 분 요 구			신분상 조치인원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		
		조치방법	조치금액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22. 10.	통보	-	-	-

제 목	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사항
-----	----------------

1. 적출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에 따라 각각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산하여야 하며, 제2항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각 시험마다 제1항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점할 수 있다.
- 공직유관단체 및 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공고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을 시험 단계별로 부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관의 경우 가점이 중복될 경우 가점비율이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하여 이로 인한 과도한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하고 있다.
- 그런데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서는 “2021년 ○○○ ○○○○ ○○○○ 및 ○○○○○○ 공개채용 계획(안)” ○○○○차-○○○○(2021.05.07.)호에서 가점 사항에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중복적용에 대한 특별한 사유나 검토없이 중복적용하였고, 장애인 가점의 경우 시험단계별로 적용하지 않고 서류전형에만 적용하였다.

〔표〕 모집인원 및 가점대상자 현황

모집분야	모집인원	서류접수 인원	가점대상		비고
			취업지원	장애인	
계	28	192	1	1	
○○-○○○	26	191	1	1	중복없음
○○-○○○	2	1	-	-	

※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가점 대상자의 중복가점은 없었고, 2명 모두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며, 장애인 가점대상자의 면접전형 결시로 채용결과에는 영향 없음.

2. 조치사항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은

관련법령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채용계획 수립시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적용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처 분 요 구 서

일련번호	2	처 분 요 구			
기 관 명	시행일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조치방법	조치금액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주)	'22. 10.	개선	-	-	-

제 목	채용 공고시 병역사항 제한에 관한 사항
-----	-----------------------

1. 적출내용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Ⅲ. 직원의 인사 ① 신규채용, 가. 공개경쟁시험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2020.11) 공개채용 표준안 제4조(채용원칙) ③“기관은 소속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 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및 ○○○○○○○에서는 직원 채용시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불합리한 제한없이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및 ○○○○○○○에서는 채용공고시 공고문 지원 자격의 병역사항에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제한하고 있어, 군복무가 예정된 청년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하였다.

〔표〕 병역사항 응시자격 제한

기관명	모집건명	병역사항 응시자격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	2021년 ○○○ ○○○○ ○○○○ ○ ○○○○○○ 공개채용 등	남자인 경우 서류접수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임용 이전 전역(제대)예정자 지원 가능
○○○○○○○○	2021년 ○○○ ○○○○ 모집공고 등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 ※ 군복무 중인 자는 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 한정하며, 단계별 전형응시 및 임용에 필요한 교육 참석이 가능해야 함

※ ○○○○○○○에서는 2021년 상반기 직원 채용공고시 병역사항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제한하였으나, 2021. 하반기 공개채용시부터 병역사항 제한을 폐지함.

2. 조치사항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및 ○○○○○○○○(주) 사장은

「인사규정」 상 채용자격 기준에 맞게 직원을 채용하고, 규정과 다른 응시자격 요건을 요구하거나 병역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3				
기관명	시행일	처분요구			신분상 조치인원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		
			조치방법	조치금액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22. 10.	통보	-	-	-

제 목	기간제근로자 면접평가 점수 오류
-----	-------------------

1. 적출내용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서는 차량기지 일반경비 직원의 중도 퇴직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간 기간제 2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 채용절차에 따라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총점(서류평가 40%, 면접평가 60%, +가점)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3명의 응시자에 대해 2021.07.08.(목) 10:00~10:30에 서류전형, 당일 14:00~15:00까지 면접전형을 실시하였다.
- 그런데 면접평가 위원의 평가점수가 잘못 입력 되었음에도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처에서는 면접전형 결과 집계표를 확인하지 못하여 평가결과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표1] 서류전형 결과

구분	평가위원1	평가위원2	평균
평가번호1	68	62	65.0
평가번호2	66	62	64.0
평가번호3	72	76	74.0

[표2] 면접전형 결과

구분	평가위원1	평가위원2	평가위원3	평균
평가번호1	88	78	98	88.0
평가번호2	78	63	86	75.7
평가번호3	86	83	91	86.7

[표3] 면접전형 집계오류

구분	평가위원1	평가위원2	평가위원3	평균
평가번호1	88	78	98	88.0
평가번호2	78	63	91	77.3
평가번호3	86	83	86	85.0

〔표4〕 서류 및 면접평가 총괄 점수 집계표

【면접점수 오입력 결과】					【정당점수 산출】			
구분	서류 평가	면접 평가	평균	순위	서류 평가	면접 평가	평균	순위
평가번호1	65	88	78.8	2	65	88.0	78.8	2
평가번호2	64	77.3	72.0	3	64	75.7	71	3
평가번호3	74	85	80.6	1	74	86.7	81.6	1

※ 평균점수는 서류평가 40%와 면접평가 60% 합계로 산출하며, 점수 집계 오류로 인한 순위 변동이 없어 합격자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조치사항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은

채용업무 추진시 채용담당직원 및 평가위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각 전형단계별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평가점수가 잘못 처리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처 분 요 구 서

일련번호	4				
기 관 명	시행일	처 분 요 구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조치방법	조치금액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주) ○○○○○○○○(주)	'22. 10.	권고	-	-	-

제 목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p>1. 적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건강진단 제도’는 사업주가 질병을 이유로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등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2005년 「산업안전보건법」 상 폐지하였고,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까지도 관행적으로 ‘채용 신체검사’란 명목으로 운영되며, 비(非)공무원 신분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검사를 요구하여 채용결과에 반영, 그 비용까지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의결(2021.7.19.)하여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와 달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합격/불합격’ 판정이 있는바, 이를 비공무원 근로자 채용에 과도하게 준용하여 채용 결격사유로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무직 등과 달리 해당 업무 수행에 특정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직종(근로자)에 대해서만 필요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 외에는 과도한 결격사유를 없애, 구직자에게 최대한 구직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2021년 자회사 3개 기관의 채용신체검사 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총 23회를 실시하였고, 대상인원 486명중 486명 전원이 합격하였으며, 검사비용은 전액 채용기관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021년 3개 자회사 채용신체검사 실시현황

기관명	실시횟수	채용신체검사 대상			검사비용부담
		대상인원	합격	불합격	
합계	23	486	486	-	채용기관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	12	183	183	-	채용기관
○○○○○○○○	7	213	213	-	채용기관
○○○○○○○○	4	90	90	-	채용기관

○ 위와 같이 채용신체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직종·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채용신체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여, 구직자에게 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검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2. 조치사항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주) 사장, ○○○○○○○○○(주) 사장은

향후 채용계획 수립시 전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을 개선하여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2021년 채용신체검사 실시 현황

연번	구분	공고일자	채용예정 인 원	채용신체검사 대상			검사비용 부담		기관명
				대상인원	합격	불합격	채용기관	구직자	
총합계			557	486	486	-	○		
소계			209	183	183	-			서울 도시철도 엔지니어링
1	비정규직	2021.02.10	4	4	4	-	○		
2	정규직	2021.03.08	7	6	6	-	○		
3	비정규직	2021.05.14	125	125	125	-	○		
4	비정규직	2021.05.14	15	7	7	-	○		
5	정규직	2021.05.25	26	25	25	-	○		
6	비정규직	2021.05.25	2	1	1	-	○		
7	비정규직	2021.06.14	1	1	1	-	○		
8	비정규직	2021.06.22	8	2	2	-	○		
9	비정규직	2021.06.22	1	1	1	-	○		
10	비정규직	2021.06.30	2	2	2	-	○		
11	비정규직	2021.08.06	9	8	8	-	○		
12	정규직	2021.09.06	1	1	1	-	○		
13	비정규직	2021.11.23	8	-	-	-	○		
소계			243	213	213				○○ ○○○ ○○
1	정규직	2021.02.16	7	7	7	-	○		
2	정규직	2021.05.14	1	1	1	-	○		
3	정규직	2021.08.27	61	32	32	-	○		
4	정규직	2021.09.03	2	2	2	-	○		
5	정규직	2021.09.03	2	2	2	-	○		
6	정규직	2021.11.05	3	2	2	-	○		
7	정규직	2021.11.05	167	167	167	-	○		
소계			105	90	90				○○ ○○○○ ○○
1	정규직	2021.04.20	30	30	30	-	○		
2	업무직	2021.04.20	30	30	30	-	○		
3	정규직	2021.11.05	10	9	9	-	○		
4	업무직	2021.11.05	35	21	21	-	○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5				
기 관 명	시행일	처 분 요 구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조치방법	조치금액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2022.10.	통보			-

제 목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및 채용과정 고지 미흡
<p>1. 적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는 감사기간('21.1.1.~'21.12.31) 중 10회(정규직 3회, 비정규직 9회)¹⁾에 걸쳐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홈 페이지에 「채용 공고문」을 게시하여 시행하였다. <p>「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채용절차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채용과정 등을 알려야 하고, 채용대상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2항을 준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문자전송,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있다.</p>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2021.1.29.)」 제3절(직원의 인사) 제4항. 파.(예비합격자 제도운영)에는 “예비합격자 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내용은 내부 인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주)의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시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용하면서 공고문 3.전형일정 및 방법 (최종합격 예정자 발표)에는 「임용포기자 및 수습기간 내 결원발생시 차 순위자 임용 또는 최종합격자 1개월 이내 중도퇴사 시」 등으로 명시하여 예비합격자의 합격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별도로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1) 정규직,비정규직 동일일자 채용 1회(2021.5.25.)

- 그리고, “○○○○ ○○○○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2021.6.30.)하면서 합격자에 대한 개별연락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명단을 공지하지 않았고, “○○○○ ○○○○ 기간제근로자”채용시 공고문에 예비자인원을 미선정하였음에도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를 임용”한다 라는 내용의 예비자합격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다.

[표1] 서울시철도엔지니어링(주) 공개채용 합격(예비)자 현황

연번	공고문	공고일	최종 선발인원	예비 합격자	유효기간 명시여부	비고
1	○○업무 ○○○○○○ 공개채용	2021.08.06	9	-	없음	
2	○○ ○○○○○○ 업무 ○○○○○○ 공개채용	2021.11.23	8	4	없음	
3	○○○○ 기간제근로자 긴급채용	2021.06.14	1	-	없음	
4	○○○○ ○○○○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2021.06.30	2	1	없음	합격자 명단 미 공지
5	○○○○ ○○○○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2021.02.10	4	-	없음	예비자인원 미 선정
6	2021년 ○○○ ○○○○ 공개채용	2021.03.08	6	4	없음	
7	2021년 ○○○ ○○○○○○ ○○○○○○○ 및 ○○○ 공개채용	2021.05.14	125	36	없음	
			7	-	없음	
8	2021년 ○○○ ○○○○ ○○○○ 및 ○○○○○○○ 공개채용	2021.05.25.	25	8	없음	
			1	-	없음	
9	2021년 ○○○ ○○○ ○○○ ○○○○ ○○○ 공개채용(재)공고 ○○○○ ○○○○○○ 공개채용 (재)공고	2021.06.22	2	-	없음	
			1	-	없음	
10	○○○○○ 공개채용 모집공고	2021.09.06	1	-	없음	

- 따라서, 예비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아 임용포기자 발생시 우선 순위에 따른 채용가능 여부를 구직자가 확인 할 수 없게 되었고, 예비자합격자 순위변경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지 않아 채용업무의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2. 조치사항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은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의 명단공개와 유효기간을 채용절차법에 따라 처리하고,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6				
기 관 명	시행일	처 분 요 구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조치방법	조치금액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2022.10.	통보			-

제 목	신규채용 임직원의 친인척 공개에 관한 사항
<p>1. 적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는 감사기간('21.1.1.~'21.12.31) 중 10회(정규직3회, 비정규직 9회)²⁾에 걸쳐 신입 및 경력사원을 공개채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2021.1.29.)」 제3절(직원의 인사) 제4항(시험의 방법) 사.(임직원 친인척 공개)에는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³⁾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 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인사규정」 제9조의 2(신규채용 합격자 중 임직원 친인척 공개)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회사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회사 홈 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에서는 신입 및 경력직(정규,비정규직)사원을 채용한 후 임직원의 친인척 인원수 산정 기준일(입사일)로 공개하여야 함에도 홈 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p>2. 조치사항</p> <p style="margin-left: 20px;">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은</p> <p style="margin-left: 20px;">임직원 친인척 관계 공개사항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채용업무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p>	

2) 정규직,비정규직 동일일자 채용 1회(2021.5.25.)

3) 친인척 범위: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